

의안번호	2205652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5.1.17.
추계번호	24D5164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(심의위원회의 운영) 및 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검토 등)	·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합·폐지·분할·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 추진(이하 “통합등”이라 함)을 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함)의 심의를 거쳐야 함(안 제6조제1항제1호, 제7조제1항 및 제2항) ·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 통합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·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함(안 제7조제4항) (현행)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 → (개정안)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검토	의무규정
2	안 제9조의3(노동이사) 신설	·정원이 50명 이상인 출자·출연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)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이사(이하 “노동이사”라 한다)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함. 이 경우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·출연 기관은 노동이사를 2명 이상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2(심의위원회의 운영) 및 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검토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	안 제9조의3(노동이사) 신설	미대상: 개정안은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.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임원의 정수에 변화가 없고,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-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으며,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
---	------------------	--

2. 상세 사유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합등의 타당성 검토 등(안 제6조 및 제7조)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합등(통합·폐지·분할·해산·청구·민영화 추진)을 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고, 검토 결과에 대한 공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두도록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¹⁾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, 검토 결과에 대한 공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두고 있음
- 2024년 9월 30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은 출자기관 97개, 출연기관 755개 등 총 852개임

1) 현행법 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(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·출연 기관을 포함한다)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
2.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
3.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[표 1]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현황

(2024.9.30. 기준)

시·도	출자·출연 기관 현황		
	계	출자기관	출연기관
총계	852	97	755
서울특별시	65	5	60
부산광역시	29	2	27
대구광역시	22	1	21
인천광역시	27	4	23
광주광역시	18	1	17
대전광역시	18	0	18
울산광역시	11	0	11
세종특별자치시	9	3	6
경기도	154	15	139
강원도	86	12	74
충청북도	44	10	34
충청남도	65	8	57
전라북도	61	8	53
전라남도	84	9	75
경상북도	72	6	66
경상남도	73	12	61
제주특별자치도	14	1	13

자료: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(www.cleaneye.go.kr)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합등의 타당성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및 심의위원회 참석 위촉위원 수,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·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
- 다만 현시점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 산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별 출자·출연 기관의 통합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